

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현황

구 분	성 명	직 위	임 기
이사회 의장	엄 준 흠	대표이사	2025. 6. 13 ~ FY2025 정기주주총회일
선임사외이사	김 형 열	사외이사	2025. 6. 13 ~ FY2025 정기주주총회일

2.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

- 이사회 진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임

신영자산운용(주)
대표이사 엄 준 흠